

(19) 대한민국특허청(KR)
(12) 공개특허공보(A)

(51) Int. Cl.³

A01N 25/00

(11) 공개번호 특 1983-0008479

(43) 공개일자 1983년 12월 10일

(21) 출원번호 특 1982-0000801
(22) 출원일자 1982년 02월 23일

(30) 우선권주장 8108147 1981년 03월 16일 영국(GB)

(71) 출원인 자안센 파아마슈우티카 엔. 부이 폴 아드리안 잔 자안센
벨지움 비-2430-바아제 텐하우쓰에반 30

(72) 발명자 존엠. 바라니
스콧트랜드 컴버나올드 다아롯치 웨이 12
데이빗 핸더슨

(74) 대리인 영국 카아리슬 웨더럴 쟈넷 크로프트 5
김경진, 최재철

심사청구 : 있음**(54) 외부 기생충 살충구제(驅除) 조성물****요약**

내용 없음

명세서

[발명의 명칭]

외부 기생충 살충구제(驅除) 조성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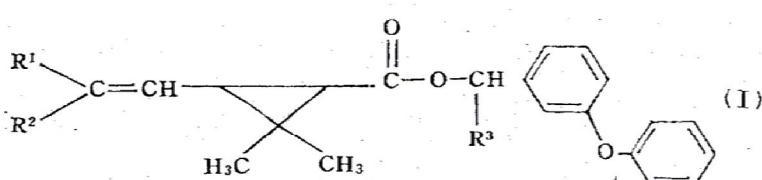
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

(57) 청구의 범위**청구항 1**

일반식 :



를 가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알코올들로 된 용매를 적어도 50% 함유한 매질중의 일반식:



의 중량으로 1%내지 30%의 피레트린제 또는 이것의 입체화학적 이성형을 함유한 인간 이외의 동물류의 외부기생충 및 구데기증을 박멸 또는 구제하는 도포 또는 살포제, 위 식에서, m 은 1, 2 또는 3의 정수이고, 또 R 은 저급알킬이다.

청구항 2

제1항에 있어서 전술한 매질이 청구범위 제1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일반식(II)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알코올들을 중량으로 적어도 80% 함유한 도포 또는 점적조성물.

청구항 3

제1항에 있어서 매질이 필수적으로 청구범위 제1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일반식(II)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알코올들로 된 도포 또는 점적조성물.

청구항 4

일반식 :



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알코올들을 중량으로 적어도 50% 함유한 액체매질 중에 중량으로 1 내지 30%의 시페르메트린, 페르메트린, 데카메트린 또는 이것의 입체화학적 이성형을 함유한 인간 이외의 동물들의 외부 기생충과 구데기증을 박멸 또는 구제하는 도포 또는 점적조성물, 위식에서 R은 저급알킬 라디칼이다.

청구항 5

제4항에 있어서 전술한 매질이 청구범위 제4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일반식(II-a)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알코올들을 적어도 중량으로 80% 함유한 도포 또는 점적조성물.

청구항 6

제4항에 있어서 전술한 매질이 필수적으로 청구범위 제4항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일반식(II-a)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알코올들로 된 도포 또는 점적조성물.

청구항 7

중량으로 적어도 50%의 2-(2-부톡시에톡시) 에탄올을 함유한 액체매질 중에 중량으로 1내지 30%의 시페트메트린, 페르메트린 또는 데카메트린 또는 이것의 입체화학적 이성형을 함유한 인간 이외의 동물의 외부 기생충과 구데기증을 박멸 또는 구제하는 도포 또는 점적조성물.

청구항 8

제6항에 있어서 전술한 매질이 적어도 중량으로 80%의 2-(2-부톡시에톡시) 에탄올을 함유한 청구범위 제6항에 의거한 도포 또는 점적조성물.

청구항 9

제6항에 있어서 전술한 매질이 필수적으로 2-(2-부톡시에톡시) 에탄올로 된 청구범위 제6항에 의거한 도포 또는 점적조성물.

청구항 10

적어도 중량으로 50%의 2-(2-부톡시에톡시) 에탄올을 함유한 액체매질 중에 중량으로 1 내지 30%의 시페르메트린 또는 이것의 입체화학적 이성형을 함유한 인간 이외의 동물들의 외부 기생충과 구데기증을 박멸 또는 구제하는 도포 또는 점적 조성물.

청구항 11

제10항에 있어서 전술한 매질이 적어도 중량으로 80%의 2-(2-부톡시에톡시) 에탄올을 함유한 청구범위 제10항에 의거한 도포 또는 점적조성물.

청구항 12

제10항에 있어서 전술한 매질이 필수적으로 2-(2-부톡시에톡시) 에탄올로 된 청구범위 제10항에 의거한 도포 또는 점적조성물.

※ 참고사항 :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.